

수원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2868 판결 [구상금 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286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4. 7 선고 2019가소280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 선고 2021. 4.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4. 7. 선고 2019가소280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5,000원 및 그중 225,000원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보조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피고는 2019. 4. 24. 원고의 건설기계 펌프카 차량의 열쇠를 허락 없이 가져가 분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열쇠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소89071호로 확정된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의 직원 D이 C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열쇠 제작 대금 225,000원을 원고가 대위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열쇠를 허락 없이 가져가 분실한 피고는 위 열쇠 제작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열쇠 분실로 인하여 열쇠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에 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휴차료 1,4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휴차료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건설기계 펌프카 차량의 열쇠를 허락 없이 가져가 분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열쇠를 허락 없이 가져가 분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이지형

판사최호열